

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오영탁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1년 1월 11일

○ 회부일자 : 2021년 1월 12일

3. 제안이유

○ 충청북도 홍보대사의 임무, 위촉, 책무, 예우 및 보상 등 충청북도 홍보대사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.

4. 주요내용

○ 홍보대사 임무의 명확화(안 제2조)

○ 분야별 홍보대사 임기의 명확화(안 제3조제4항 단서)

○ 홍보대사의 책무를 규정(안 제5조)

○ 홍보대사에 대한 예우 및 보상의 명확화(안 제7조)

5. 검토의견

○ 이 개정조례안은 현재 충청북도의 홍보대사는 도민 홍보대사와 각 실과에서 각종 행사 시 위촉하는 홍보대사로 구분할 수 있으나,

조례는 이러한 홍보대사의 구분 없이 임기, 보상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례상 구분되는 조항이 필요함.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에서는 홍보대사 임무내용을 명확화 하였고,
- 안 제3조4항에서는 홍보대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는 바, 각 실과에서 연예인 등의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5조에서는 홍보대사의 품위유지, 홍보 적극동참, 명예 훼손 금지, 개인 영리추구 금지 등 홍보대사의 책무를,
- 안 제7조에서는 홍보대사의 예우 및 보상에 대해
 -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, 홍보대사 임무 수행 시에는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도록 하였고,
 - 홍보대사의 경우 여비 및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각 실과에서 위촉하는 홍보대사는 활동비 및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보상에 대해 명확화 하였음.

○ 이 조례개정안은 홍보대사 운영에 대한 업무내용의 구체화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